

지식재산과 법 _ 21년 1학기 (분반2)

강의록 : 재산법

양승엽 (syyang25@gmail.com)

○ 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

- 귀찮은 것 : 규제와 의무 (예 : 재산권의 제한)
- 복잡한 것 : 전문용어와 문장구조, 관료적인 절차
- 만일 법이 없다면?
 - 그린벨트 해제 →
 -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
 - 법률용어의 뜻이 정확하지 않다면 →
 - 절차적인 규정이 없다면 →

○ 법의 기능

1. 분쟁의 해결 – 비교) 해결사, 촌장, 성직자
2. 질서의 유지 : 범죄, 국가기능, 경제질서...
3. 공익의 추구
4. 정의와 인권의 수호
 - 부당한 공권력
 - 거대사인(私人)의 횡포
 - 범죄피해구제

○ 법이념의 3요소

1. 정의 : 매우 다양한 개념
2. 법적 안정성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질서 유지 목적
 - 현실지향적이며 실정법 위주 : 법실증주의
 - 무질서보다는 질서유지를 위해 악법 선택의 우려
 - 생각해 볼 문제

- 죄형법정주의에서 형벌불소급의 원칙

→ 제헌헌법 : 친일파 처벌

제4차 개헌 : 반민주 행위자 처벌

3. 법의 합목적성

- 목적(사회 이념)과 수단(법률)이 일치
- 만일 법률이 사회가 지향하는 목적(헌법)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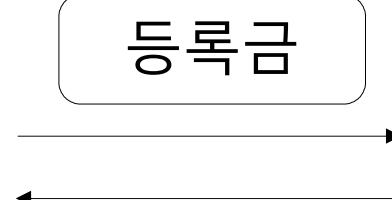
○ 법치주의(法治主義)

- 고전적 의미 : 국가행정작용은 법률에 의함
→ 입헌주의(立憲主義)의 기초
- 현대적 의미 : 국가행정작용 + 일반 사회질서도 법률에 의함
- 생각해볼 문제 : 법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 권리의식의 자각과 행사의 의지



등록금



교육서비스

(채권자)

(채무자)

사례) 장애인 학생의 대학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장애인 학생의 학교 입학

- 학교의 장애인 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 학습환경 열악
- 장애인 학생의 대학교에 대한 소송
- 법원의 인정 (배려의무 위반 → 위치료 지급)

○ 법원(法源)

- 법원의 정의 : 법의 존재형식 / 인식근거
예) 민법전, 형법전
- 법원의 종류

- a. 성문법(成文法) : 문자 표기, 형식과 절차
- b. 불문법(不文法) : 성문법 + 관습법과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
 - 관습법(慣習法)의 성립
 - 개념 : 사회에서 발생한 관습이 예의와 도덕의 단계를 넘어 → 사회의 법적 확신을 갖춤
 -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 판례법의 인정 여부 : 사실상의 구속력

I. 법률관계와 권리 · 의무

1. 법률관계

- 사람(人)과 사람(人)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
비교) 도덕, 관습 → (예) 계약 : 사적자치
- 사람과 사람 간의 법률관계 → 권리와 의무의 관계

2. 권리능력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권리의 주체 = 권리를 가지는 자 : 자연인
(自然人)과 법인(法人)
(참고) 법인 : 사람 또는 재산의 구성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 법기술
 - 단체 – 공동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
 - 재산 – 재산이 섞이지 않음
- 권리능력 :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 권리능력의 기간 : 출생에서 사망까지

(태아 : 원칙 X, 예외 O – 불법행위, 상속)

- a. 출생의 시기 :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의학)
- b. 사망의 시기 : 맥박정지설, 호흡정지설, 심장영구정지설, 전뇌사설(특별법)
→ 실익은 무엇일까? : 상속 등의 차이

(생각) 동물의 권리능력 : 위자료 청구권

→ 판례 부정

3. 의사능력

- 법률효과(권리의 변동)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권리능력 + 사적 자치(계약)를 할 이성적 능력
- 정의 :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알아 자기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 기준 : 통상인의 판단능력
- 의사능력의 부재 = 의사무능력자 → 법률 효과의 무효 (취소X) (예) 혼수상태, 신생아

4. 행위능력

- 자신 스스로(독립)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비교)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 case마다 판단
- 일률적으로 법률행위를 제한하자 → 행위무능력자 (판단기준 : 나이 or 법원의 선고)
 - 행위능력자 : 성인
 - 행위무능력자
 - a. 나이 : 미성년자

b. 선고 : 피+성년후견 · 한정후견+인

- 사유 :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
 - 표시 : 후견등기부
- 효과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소권 발생
→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와 거래의 안전

II. 시효(時效)제도

1. 시효의 개념

- 일정한 사실상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
- 진정한 권리관계를 묻지 않고
-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 법률효과(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를 발생시키는 제도

(종류) 취득시효 & 소멸시효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a. 법적 안정성의 확보 : 제3자의 신뢰 존중
- b. 입증곤란의 문제 : 입증곤란의 당사자 구제
- c.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

3. 소멸시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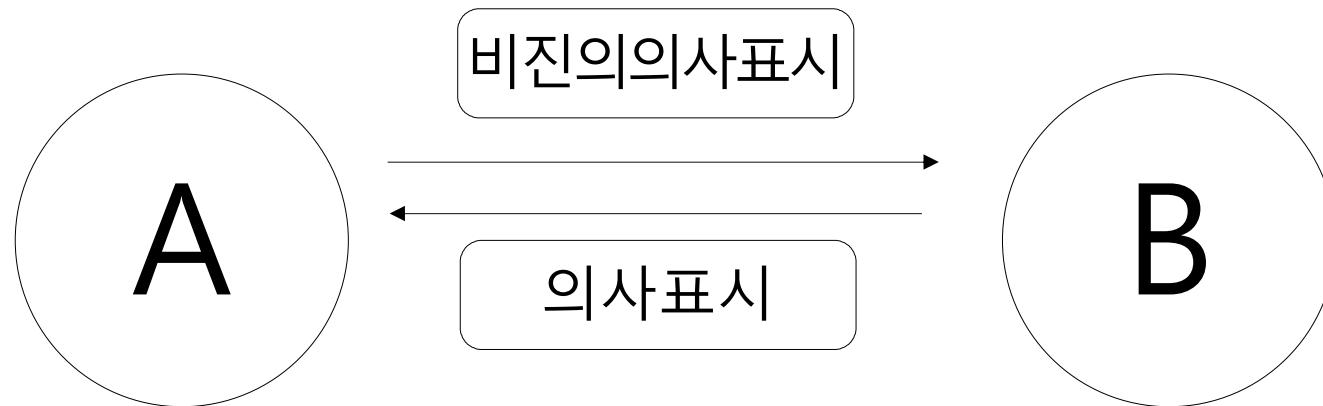
- a. 채권(원칙) : 10년
- b. 채권과 소유권 외의 재산권 : 20년
- c. 예외 다수 : 임금채권 - 3년 (비판 有)

4. 소멸시효의 중단

- 개념 : 권리의 행사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새롭게 시작
예) 소송 : 가압류 등

III. 의사표시

1. 개념 :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 (예: 계약의 청약)
2. 하자있는 의사표시
 - 1) 비진의 • 의사표시
 - 개념 : 진의 없이 표시행위를 하는 것
예) 실제 줄 생각 없이 선물을 사주겠다는 약속(증여)



- 효과

- a. 원칙 : 표시한 대로 효력 발생
- b. 예외 : 무효
 - ① 상대방이 비진의를 알고 있음
 - ② 상대방이 과실로 비진의를 모름

: 평균인의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경우

(판례) 근로자에게 강제로 내게 한 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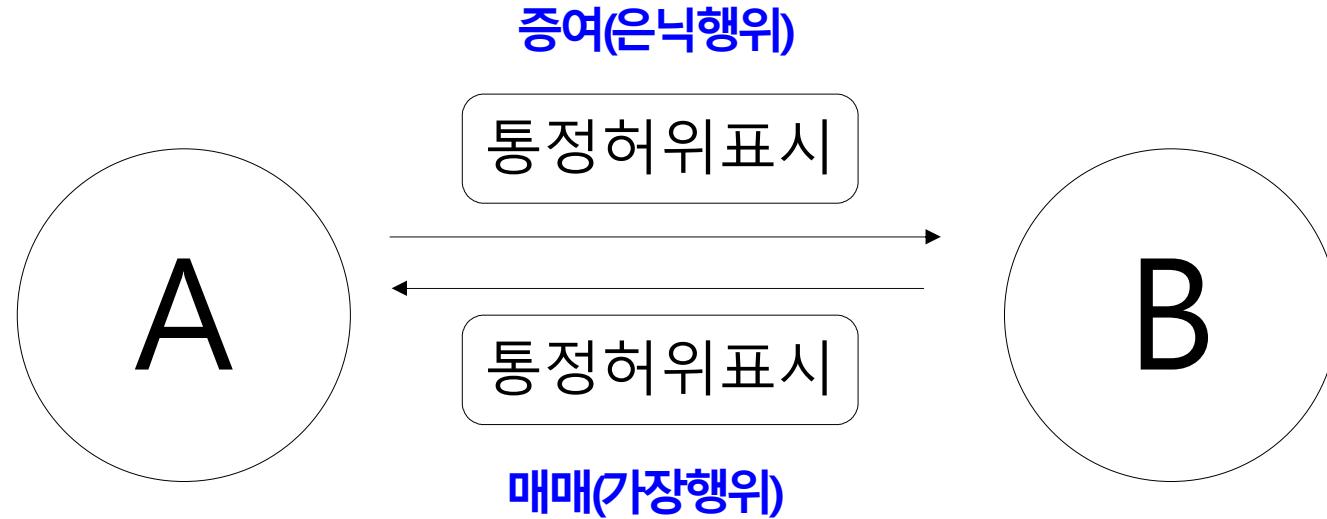
: 비진의 → 무효 → 부당한 해고인지를 다툼

2) 통정 · 허위표시

- 개념 :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 양해 내지 합의하여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

(예)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 매매의 형식을 취함

- 매매 = 가장행위 / 증여 = 은닉행위



- 요건
 - a. 의사표시의 존재
 - b.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c. 불일치를 표시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합의(통정)

- 효과
 - a. 양 당사자 모두 : 무효
 - b. 선의(善意)의 제3자 : 보호 – ★대항하지 못함
※ 주의 : 선의 = 부지(不知, 모름)

※ 대항하지 못함 = 주장하지 못함

→ 현 상태를 인정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개념: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시자가 알지 못함
- 착오의 종류 (요건X)
 - a. 표시상의 착오 : 오기(誤記)
 - b. 내용의 착오 : 제대로 표시했지만 표시의 의미를 잘못 앎

(예) \$ - 홍콩달러와 미국달러가 가치가 같다고 생각

c. 동기의 착오 : 진의를 결정할 때 동기에서 착오

- 착오의 요건 → 효과는?

a. 의사표시에 착오가 존재

b.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착오일 것 – 매우 쟁점

c.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민법 109조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효과 : 취소 가능 but 제3자(善意)의 신뢰보호
- * Case : 건물을 사는데 부동산중개업자를 신뢰하고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계약

→ 법률행위(계약)의 중요 내용 +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음 : 취소 인정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개념
 - a. 사기 : 표의자가 타인(상대방 or 제3자)의 **기망 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함
 - b. 강박 : 표의자가 타인(상대방 or 제3자)의 **강박 (위협) 행위**에 의해 한 비진의 · 의사표시

- 요건
 - a. 고의: 사기 · 강박으로 착오 · 비진의를 일으킬 고의
 - b. 기망 · 강박행위
 - c. 기망 · 강박행위의 위법성
 - * 약간의 과장광고 or 고발의 위협 : 경우에 따라 다름
 - d. 착오 ·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 인과관계가 필요
- 효과 : 취소 but 제3자(善意)의 신뢰보호

* 민법 110조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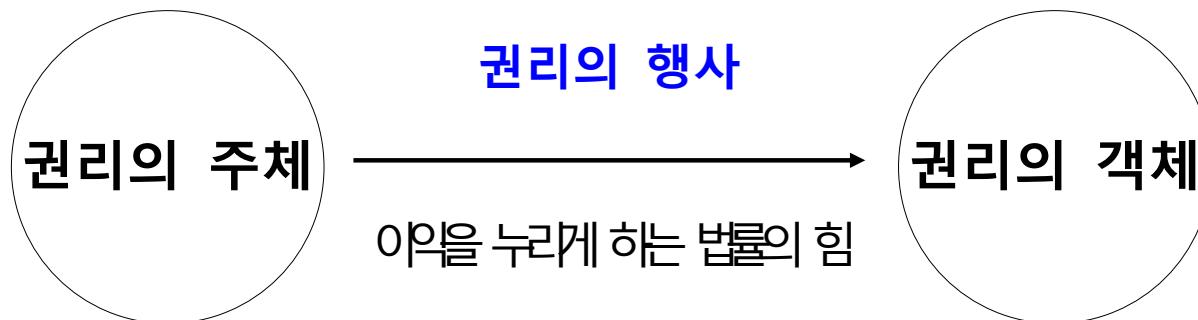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a. 상대방의 사기 · 강박 : 취소권 발생
- b. 제3자의 사기 · 강박 : 상대방이 사기와
강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 취소권 발생

※ 생각해볼 문제 : 청탁 채용비리

I. 권리의 객체(客體)

1. 권리 객체의 의의



자연인 & 법인 : ○○능력

권리의 대상

- 채권(債權)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
- * 권리의 객체(대상) = 급부 (예 : 행위)

- 물권(物權) :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 * 권리의 객체(대상) = 물건
 - ** 물건 = 민법상의 정의 규정
- 채권은 사적 자치의 영역 : 다양한 객체 발생
- 물권은 법으로 한정된 영역 내에서 행사
: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 그 이유? :
- ★ 물권은 대세효(절대효)를 가지기 때문에 그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정을 해함

2. 물건의 개념

- 민법 98조 :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을 말함
- 물건의 요건
 - : 유체물이거나 관리가능한 자연력
 - ① 유체물 :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
 - ② 관리가능한 자연력 :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무체물 (예: 전기, 원자력 등)

- * 관리가능 = 물리적 지배 → 법률상의 사용
 - 수익 · 처분이 가능
 - ③ 비인격성: 사람의 신체 등이 인격과 관련 없을 것
 - * 업무 중 의족의 파손 – 산재 인정 ?
 - ④ 독립한 물건일 것: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 :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이 있음
(예: 소유권의 지분, 저당권의 순위)
- 참고) 종물(ex. 시계줄)의 주물(ex. 시계)에 대한
종속성 + (주유소와 주유기)

3. 부동산과 동산

민법 99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不動產)

- 토지 : 일정한 지면과 그 上·下
(예) 토지의 구성물(바위, 나무, 벼) → 토지
- 정착물 :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분리될 수 없는 물건

- a. 건물 : (최소) 기둥 + 지붕 + 주벽(判)
- b. 수목의 집단 : 입목법(등기)

2) 동산(動產)

- 정의 : 부동산이 아닌 물건
 - * 관리가능한 자연력은? → 동산!

II. 物權法과 物權의 성질 및 종류

1. 물권법의 의의

- 물건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2. 물권법의 성질

1) 강행규정

- 사람과 물건의 관계 ← 거래의 상대방이 개입
- 임의적인 물권 창설 금지 → 거래의 안정
→ 물권법정주의

2) 비보편성

: 물권에 대한 각국의 고유한 관습 (예) 전세권

3. 물권의 성질

1)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

- 권리를 누리는데 타인의 행위가 불필요 (비교 : 채권)
- 물권으로부터 나오는 이익 향유 : 용익물권 + 담보물권

2)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

- 같은 물건에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음(일물일권주의)

(예) 소유권 : 공유 시 지분, 저당권 : 순위 有

3) 권리의 절대적 보호 (★★★)

- 물건에 대해 물권을 가지지 않는 자를 배척
→ 침해시 방해제거청구권 행사 : **대세효(對世效)**

(비교) 채권 – 채무자에게만 행사 : **대인효(對人效)**

→ 지식재산권의 성격 : 준물권

4) 권리의 강한 양도성

- 재산권은 양도 가능 : 물권 >> 채권

(비교) 양도 불가능한 채권 : 채권의 성질상
(전속계약), 사회정책(사회복지) 등

(참고)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 권리의 성격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 – 人權 親權

4. 물권의 종류

用 益 物 權	①	소유권	擔 保 物 權	①	전세권
	②	점유권		②	유치권
	③	지상권		③	질권
	④	지역권		④	저당권

III. 物權의 변동

1. 물권 변동의 의의

- 물권의 변동 = 발생 · 소멸 등 = 득실변경
 - a. 물권의 발생 : 선점(원시취득), 매매 · 상속(승계취득)
 - b. 물권의 소멸 : 물건의 파괴 및 이전

2. 물권 변동의 公示

1) 공시의 의의

- 물권의 배타성 :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야 거래가 안정
- 공시를 갖추어야 만 물권이 변동 (효력 有)
(예) 토지의 매매 + 등기의 이전 = 소유권 변동
→ 쟁점 : 이중매매

2) 부동산의 물권 공시방법 : 登記

민법 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이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등기 必要 : 법률행위(예 : 매매계약)
- 등기 不要 : 법률의 규정(예 : 상속, 경매 등)
∴) 공백 방지

(참고지만 중요) 등기의 구성, 하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정일자

3) 동산의 물권 공시방법 : 인도(引渡)

- a. 현실인도 : 직접 인도
- b. 간이인도 : 양수인이 이미 점유 중
- c. 점유개정 : 양도인이 계속 점유

IV. 소유권(所有權)

1. 소유권의 의의

-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토대

: 사유재산 보장 + 자유로운 교환

→ 소유권 보장 + 계약의 자유(사적자치)

2. 소유권의 내용 : 소유물의 사용 · 수익 · 처분

민법 211조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 반환 청구권

- 대상 :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
(비고 - 있는 자 : 임차권자, 유치권자 등)

2)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 대상 :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권리 없이 방해하는 자
- 생각해볼 문제
: 폭풍으로 자신 마당의 나무가 옆집 마당에

쓰러졌음 : 반환청구권 vs. 방해제거청구권

3)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 방해의 우려 있는 행위 : 추상적 염려 X,
상당한 개연성 필요(인과관계)
- 효과 : 예방행위 청구(예: 나무 고정) or 손해
배상담보 청구

(판례) 대학교와 사찰 근처에 고층건물을 짓는
것이 소유권 방해에 해당하는가?

- ▶ 사안 : 소유권에 근거한 방해예방청구권
국립 A대학은 5층 과학관 완공 →
B는 근처에 24층 아파트 건축 중 19층까지 골조공사
→ A는 연구환경 및 교육 지장을 이유로 16층 이상
건축 금지 가처분 신청 : 인용
- ▶ 참고: 상대방 건물의 일조권 방해- 불법행위 영역

V. 불법행위(不法行爲)

1. 불법행위의 의의

- 불법행위란 :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불법행위 효과 : 손해배상책임 (민법 750조)
- 법정채권 (\leftrightarrow 약정채권 : 계약)

2. 불법행위의 요건

민법 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 가해자의 고의 or 과실
- 2) 위법성 : 사회반가치적 행위(의무와 결과에서)
- 3) 손해의 발생 :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4)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설 (규범적 · 경험적)
- 5) 책임능력 : 책임무능력자는 배상 X
→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

3. 불법행위의 효과 : 손해배상

- 손해배상의 방법 : 원칙 - 금전배상
예외 - 합의로 원상회복
- 손해배상청구권자 : 피해자 (자연인 & 법인)
예외) 태아 :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 (민법762조)
- 과실상계 가능 : (예) 교통사고

V-2. 特殊한 불법행위

1.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756조)

1) 의의 : 피용자의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

→ 피용자의 자력 부족 우려

→ 사용자에게 연대책임

※ 자기책임 원칙의 예외

2) 성립요건

①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지휘감독 관계

- ②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
- ③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일 것
- ④ 면책사유가 아닐 것 : 사용자가 피용자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2. 의료사고로 인한 불법행위

1) 의의

- 의료사고의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함

→ 환자의 전문적 지식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

- 입증책임의 완화와 전문적 판단기구의 필요성

2) 분쟁의 조정기구

-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입증책임의 완화

(판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
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
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
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
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
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의사의 설명의무 - 채무불이행

1) 의의

- 의료사고는 대부분 불법행위책임으로 접근
- 채무불이행의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쟁점

2) 의료계약에서 의사의 의무

- a. 진료의무 (가장 주된 의무)
- b. 비밀준수의무
- c. 진료기록의무
- d. 설명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연관)
- e. 기타 주의의무
 -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다 하지 않을 경우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 불이행으로 보아 배상 인정 (다수의 판례)

(참고) 생활법률 - 임차인의 권리 & 보증 (시험X)

○ 주택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의 의무)

1. 임대목적물의 수선 의무 : 임차인 vs. 임대인
 - 건물 이용에 꼭 필요한 수리 비용 : 임대인
 \therefore 임대인의 의무 = 임대목적물을 계약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
(예) 깨진 유리창, 지붕에 비가 새는 경우
 - 만일 임차인이 수리를 한 경우 :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Q. 임차인의 실수로 집이 파손된 경우 수선 의무?

-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
- 단,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 or 계약 해지 가능

2. 임대차 계약의 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의 보장
: 계약 자유의 원칙 수정
-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 자동으로 2년 간주
- 편면적 강행규정 : 임차인은 2년 미만 주장 가능
- 목시적 갱신 : 계약만료 전 6개월 ~ 2개월,

임대인이 계약갱신의 의사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 묵시적 갱신 이후 언제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가능 → 3개월 후 효력
- 당사자 간 합의해지는 가능 : 계약 내용에 위약금 또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확인

Q.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월세(차임) 지급?

→ 차임 지급

(∵ 임차인이 임대물을 사용하고 있음)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 외)

→ **임차권등기명령**

: 지방법원에 신청 → 전세권과 같은 효력

* **2020년 개정 임대차보호법 :**

a.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X (예 : 임대인거주)

→ 1회에 한해서 행사 가능 ∴ 4년 가능

b.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청구권

- 계약체결 후 1년 이내 증액 X
- 20분의 1 = 5% 이내 증액 가능

○ 보증 : 인적 담보 (cf. 물적 담보 = 저당권 · 질권)

- 담보의 의의 : 변제기 시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채권의 안전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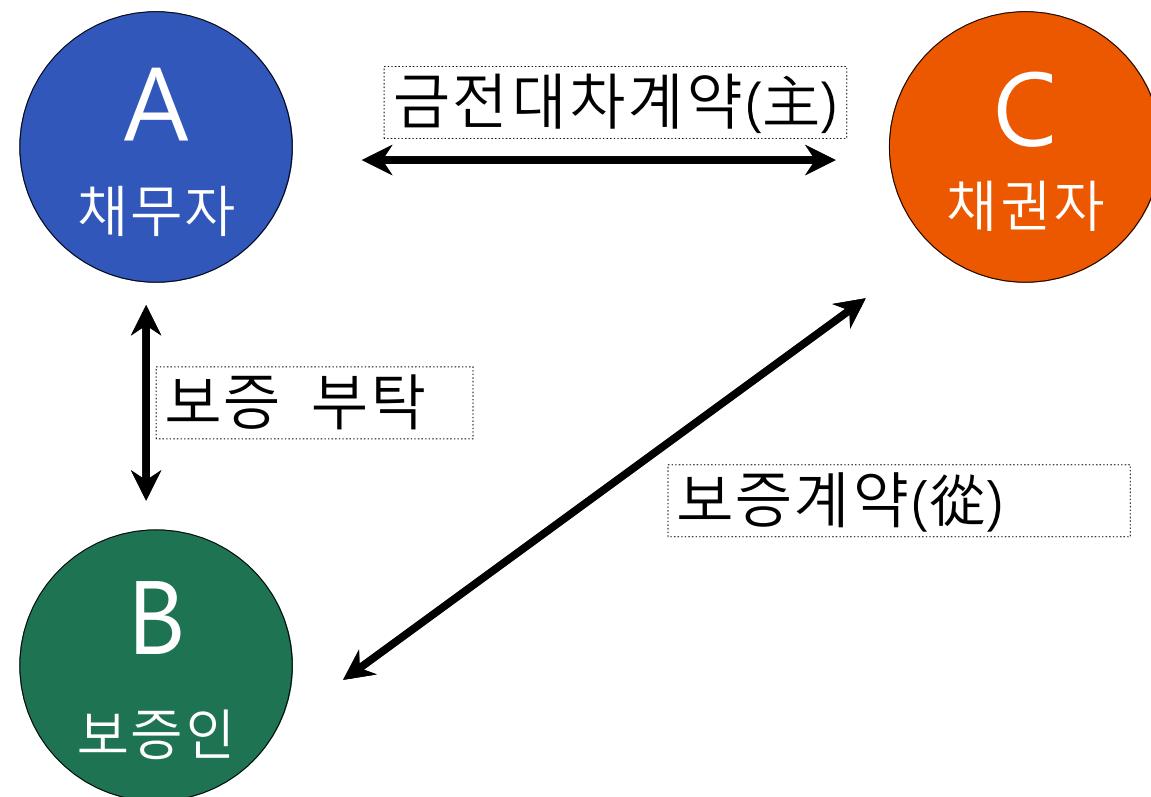
1. 보증계약의 성격

- 금전대차 계약과는 독립된 별도의 계약

2. 보증계약의 종류

- a. 일반보증 :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도와주는 성격 (보충성이 있음)

b. 연대보증 :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 부담 (보증성이 없음)



- 보충성이란 :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의 有無
 - 최고 · 검색의 항변권 :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조사하여 변제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연대보증은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이 有無?